

개인학습자용

# 2018년 2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접수계획

## 목 차

1. 신청대상 .....	1
2. 신청구분 .....	1
3. 신청기간 및 방법 .....	2
4. 제출서류 .....	3
5. 신청 및 처리 절차 .....	7
6. 신청건별 처리예정일 .....	7
7. 유의사항 .....	8
8. 신청서류 제출기한 및 접수장소 .....	10

[붙임1]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붙임2] 학습자등록신청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첨부서비스 안내

[붙임3]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 제출 서류

## 1 신청대상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거나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에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

## 2 신청구분

신청구분	내용
학습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인적사항, 희망학위 및 전공 등 기재) ·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li> </ul>
학점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된 자 또는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한 자가 취득한 학점들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학위 및 전공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 중인 학위/전공을 다른 학위/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li> </ul>
학위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가 다른 학위과정/전공으로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li> </ul>
재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인정신청 후 심의결과(학습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li> </ul>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등록 또는 학점인정이 완료된 학점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li> <li>※ 납부된 수수료 환불불가</li> </ul>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li> <li>※ 전공교양호환과목 : 해당 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호환이 가능한 과목</li> </ul>

\* 학점인정 신청 가능한 학점원 : 학점은행 홈페이지 > 제도소개 > 학점인정 대상에서 확인가능

## 3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구분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학습자등록	2018.4.2(월) 10:00 ~ 4.30(월) 18:00
	학점인정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8.5.11(금)
	학위 및 전공변경	2018.4.2(월) 10:00 ~ 4.30(월) 18:00
	학위연계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본원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8.4.2(월) ~ 4.10(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학점인정	
	재심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학습자등록	2018.4.2(월) ~ 4.10(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점심시간 신청불가)
※ 북한이탈주민의 대학 이수학점,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본원 방문접수만 가능함 ※ 주차공간 부족으로 대중교통 이용 협조		
교육청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8.4.2(월) ~ 4.10(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6:00(점심시간 신청불가)
	학점인정	
※ 접수 장소는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 ※ 방문접수만 가능한 민간자격 등의 자격학점은 방문접수기간을 확인 바람
- ※ 북한이탈주민의 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과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방문접수만 가능함(온라인접수 불가)
- ※ 중복신청(전공변경 등 각종신청과 학점신청 동시진행) 건에 해당되는 경우 p.8 유의사항 확인바람
-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기관이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므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바람
-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에 본원으로 서류가 이송되므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 시 과목명 및 학점, 성적, 이수학기 등의 잘못된입력으로 인한 보육교사, 사회 복지사 자격증 발급 지연 및 불가 등의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온라인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 (1) [학습도움방] 메뉴 - 각종 온라인 신청 메뉴 -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 배너 클릭
  - (2) [알려드려요] 메뉴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배너 클릭
  - (3) [신청하세요] 메뉴 -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 배너 클릭
- 본원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우교동 7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 교육청 방문 : 17개 시도교육청 18개 부서(p.11 참조)

□ 신청 수수료 결제방법

구분	결제방법	비고
온라인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5일 이내 입금)	* 학습자등록 : 4,000원
본원 방문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 학점인정 : 1학점 당 1,000원
교육청 방문	지로, 계좌이체	* 이체 수수료는 학습자 부담

※ 온라인 신청 시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반드시 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각종 신청에 따른 수수료 결제는 본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함. 신청 수수료(현금)를 서류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금지사항(현금 분실 시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 수수료 면제 안내

-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됨 (단,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납부해야 함)
-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자격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

신청구분	제출서류	
	방문	온라인
학습자등록 (고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li> <li>•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신분증 1부</li> <li>• 최종학력증명서 1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 본 1부</li> <li>• 최종학력증명서(온라인 첨부서비스 이용자는 서류 제출 면제) 1부</li> </ul>
학점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인정신청서 1부</li> <li>• 학점원별 별지서식 1부</li> <li>• 학점 취득 증빙서류 1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본 1부</li> <li>• 학점원별 별지서식 출력 본 1부</li> <li>• 학점 취득 증빙서류 1부</li> </ul>
재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심신청서</li> <li>• 강의계획서(학과장 이상의 날인이 있는 원본)</li> </ul>	불가
*기타 신청	불가	제출서류없음

\* 기타신청 :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학점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변경

※ 원본서류(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 받은 서류) : 서류도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온라인 증명서 : 서류도착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학습자등록 신청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고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졸업증명서</li> <li>• 검정고시 합격증명서</li> </ul>	학습자등록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이 입력한 고등학교 졸업 정보(1982년 1월 이후)가 조화·확인된 학습자(정보 활용 동의지)는 제출서류 없음
전문대학, 대학 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학 혹은 재적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원본 증명서 모두 제출해야 함</li> </ul>
전문대학, 대학 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적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적증명서의 재적기간과 증명서 발급일이 동일한 경우 재학으로 간주함</li> </ul>
전문대학, 대학 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사 이상 학력증명서는 학사학위 과정 동일전공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불인정</li> </ul>
간호·보건계열 학습자 등록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허(자격)증명서(※ '면허증' 제출 불가)</li> </ul>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 접수만 가능</li> </ul> [붙임 3]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 제출 서류(p.15) 참조	
보육교사 2급 이상 취득자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유사과목(홈페이지-공지사항-730번 [아동학(아동가족)전공 유사과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에 방문하여 원본 확인(우편발송 시 반환하지 않음)

※ 고졸학력인정 관련 유의사항

- ① 각종학교 및 폐교학교 등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②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학점인정 신청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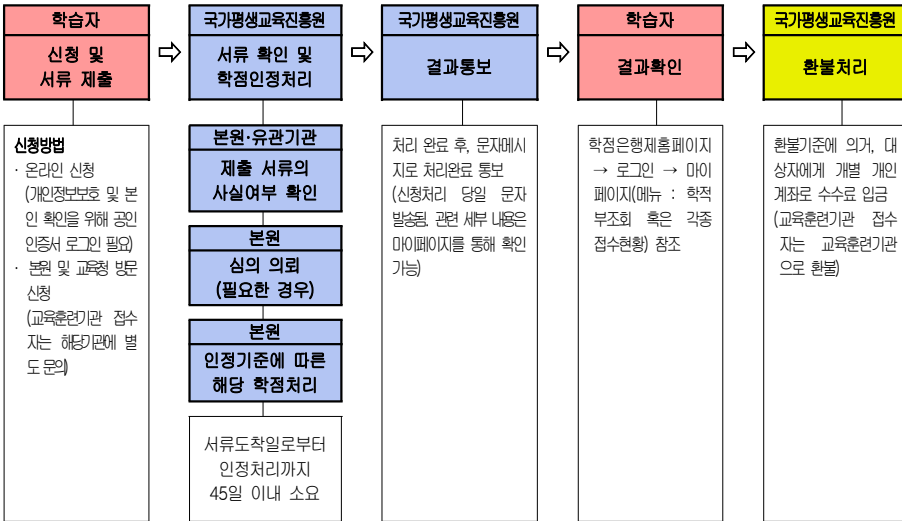
학점원	제출서류	
평가인정 학습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 없음</li> <li>• 전공교양 호환과목의 경우, 학습구분을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음</li> </ul>	
학점인정대상학교	온라인신청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통해 이수한 학점의 경우 성적증명서에 이수년도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학교로 학력조화를 의뢰하고 있으므로 해당 <b>방송통신대학교의 학번</b> 을 반드시 입력해야 함 - 미 입력시 처리 불가로 환불 될 수 있음
	방문신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발급되는 이수내역별 성적내역(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성적 > 이수연도별 성적조회 > 엑셀다운) 파일을 출력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지참 바람 - 미 지참시 처리 불가로 환불 될 수 있음
시간제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li> </ul>	

학점원	제출서류	
자격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금융연수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PC정비사1,2급, 네트워크관리사2급, 청소년지도사(1,2,3급), 청소년상담사(1,2,3급), 행정관리사(1,2,3급), ERP정보관리사(1,2급), 정보기술자격(ITQ)시험(A,B급) GTQ(1,2급),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2급)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매경TEST(최우수,우수) 경제경영이해력시험 한경TESAT(S,1,2,3급), 재경관리사, 회계관리(1,2급), 세무회계(1,2,3급),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급 항공정비사, 교통안전관리자,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li> </ul> </li> <li>제출서류 없음</li> <li>단, 신청내역과 조회결과가 상이할 경우 추가 제출자료 요청 할 수 있음</li> </ul>	
	체육지도자연수원 발급 자격증 TEPS(1+,1.2+,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격확인(증명서)</li> <li>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성적표</li> </ul>
	행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큐넷(Q-net)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확인서"</li> </ul>
<p>※ 위 자격 외의 자격은 방문접수만 가능, 자격증 사본과 원본을 함께 지참 후 방문 필요(자격확인서로는 인정불가)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증 : 유효기간 내에 학점신청을 해야 함</p>		
<p>• 방문 : 자격 사본 (원본 지참 필수)                      - 자격 합격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이런 자격의 경우,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해야함(예: 행정사, 세무사, 변리사, 가족인공수정사 등)                      - 학점인정대상 제외자격은[학점은행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자격학점인정기준 641번 '제20차 자격학점인정기준고시' p.4 2.학점인정 대상 제외자격 참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의 개정으로 2015.9.28 이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해 자격학점을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자격학점 신청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일자 확인을 위해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음</p>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제출서류 없음
	시험면제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b>확인되는</b> 과목 : 제출서류 없음</li> <li>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b>확인되지 않는</b> 과목 :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과정이수확인서, 원본 성적증명서</li> </ul> </li> <li>방문 :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과정이수확인서</li> <li>성적입력이 필요한 경우 원본 성적증명서 제출</li> </ul>

학점원	제출서류								
국가무형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 제출서류 없음</li> <li>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원본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알림방→자료실 학습자신청양식 620번 서식11 '국가무형문화재']</li> </ul> </li> <li>방문</li> </ul>								
	이수등급	제출서류							
	<table border="1"> <tr> <td>보유자</td> <td>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td> </tr> <tr> <td>전수교육조교</td> <td>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td> </tr> <tr> <td>이수자</td> <td>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td> </tr> <tr> <td>전수생</td> <td>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 양식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학습자신청양식 620번 서식11 '국가무형문화재'] 탑재</td> </tr> </table>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전수교육조교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이수자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전수생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 양식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학습자신청양식 620번 서식11 '국가무형문화재'] 탑재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전수교육조교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이수자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전수생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 양식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학습자신청양식 620번 서식11 '국가무형문화재'] 탑재								

※ 복한이탈주민 학습자의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p.15 [붙임 3] 참조

### 5 신청 및 처리 절차



\* 인정받을 학점은 한 건의 접수로 신청 바람(분할 신청 시, 학점인정처리가 지연 될 수 있음)

### 6 신청 건별 처리예정일

####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구분	처리예정일
제출서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등록 시 온라인 증명서 첨부 서비스 이용한 경우</li> <li>· 추가서류 제출 없이 처리되는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의 학점인정 신청 경우</li> <li>※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자격증의 경우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 하나, 자격조회 회신결과 반영 후 처리가 가능하므로 제출서류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예정일이 반영됨</li> </ul>
제출서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등록 시 온라인 증명서 첨부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최종학력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li> <li>· 원본 서류 제출 필요한 학점원(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 독학학위제 면제과정, 국가무형문화재)의 학점인정 신청의 경우</li> <li>· 본원 또는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접수된 서류</li> </ul>

※ 해당 분기에 정상적으로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서류 제출일까지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학점은행재 교육훈련기관(평가인정기관)을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학점인정절차에 따라 처리되므로 상위 처리예정일과는 관련이 없음

#### □ 기타신청

신청구분	신청방법	처리예정일
· 학위 및 전공변경 · 학위연계 · 학점취소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온라인	신청 후 3일 이내
· 재심	방문	신청 후 2개월 이내

#### □ 신청내용에 대한 결과처리 확인

##### ○ 처리 진행과정 확인 방법

-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진행 과정(서류도착 및 검토 중, 서류미비, 환불발생, 처리완료 등) 및 처리예정일은 **학점은행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 각종 접수현황 → 현재 신청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

##### ○ 처리 결과 확인 방법

- 신청내용에 대한 학점인정 처리결과는 추후 **학점은행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 학적부 조회 → 학점인정내역]** 또는 **[마이페이지 → 각종 접수현황]**에서 확인 가능

### 7 유의사항

####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유의사항

##### ※ 고졸 학력 인정 관련 주의사항

- ① 각종학교 및 폐교학교 등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②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 1) 접수

- ①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 시 입력하는 과목명 및 학점, 성적, 이수학기 등의 **잘못입력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지연 및 불가 등의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② 대행업체(사설기관) 등을 통한 단체 및 대리접수는 불가함
- ③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접수 불가, 점심시간 신청불가)
- ④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본원방문접수만 가능함(온라인 및 교육청접수 불가, 점심시간 신청불가)

#### 2) 제출서류

- ① **제출서류 최종 마감일까지 접수되지 않거나 미비서류가 발생할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원에서 지지 않음**
- ②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됨

- ③ 원본(무인발급기 발급서류 등)증명서는 본원 서류도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온라인발급 증명서는 본원 서류도착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 본으로 제출해야 함
  - ④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과 신청내역이 다를 경우 변경된 인적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해야함
  - ⑤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복합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제출 서류 포함)
- \* 각종(현장)실습확인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제출 시에도 반환하지 않음**

### 3) 자격학점

- 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자격 외의 민간자격은 방문접수만 가능 함
  - ②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③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이런 자격의 경우,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서류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변리사, 가측인공수정사 등)
- ※ 학점인정대상 제외 자격은 [학점은행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자격학점인정기준-641번 「제20차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p.4 2. 학점인정 대상 제외 자격 참조**
-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의 개정으로 2015.9.28 이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 자격학점을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7-3.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 학위연계신청

- ① 변경/연계 신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이후 학점인정이 가능함
- ②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시 이미 인정된 과목에 체크가 되어있으므로, 온라인 신청 시, **체크를 해지할 경우, 해당 과목은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변경된 학적부에는 반영되지 않음** 추 후 해당 과목을 다시 인정받고자 한다면 학점인정신청 절차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됨
- ③ 학위연계신청 시 최대 연계 가능학점인 80학점 범위 내에서는 수수료가 면제됨

### 7-4. 재심신청

- ① 강의계획서는 **이수 당시 강의계획서**로 반드시 **학과장 이상의 날인**을 받아 **원본으로 제출** 바람
- ② 접수된 강의계획서는 사실 확인 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청기한 엄수바람
-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지침」(2015.1.6) 제정으로 2016.3.1 이후에 인정받은 학점은 인정받은 분기 기준으로 그 다음 분기에 재심신청 가능

####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불인정 처리 사례

- ① 학습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인정신청을 한 경우
- ② 희망학위 및 희망전공 기재 오류
- ③ 학점인정신청 입력내역과 제출서류 기재내역이 상이할 경우
- ④ 온라인 또는 방문 등 접수를 하지 않고 증빙서류만 제출한 경우
- ⑤ 제출서류 없는 자격신청 시 자격 명, **자격번호 잘못기입**으로 자격조회 불가한 경우 (알파벳 대문자 I를 숫자 1로 기입)

## 8 신청서류 제출기한 및 접수장소

### □ 온라인 신청

- 제출기한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는 **5.11(금)도착 분**까지 유효함
- 제출처 :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 등기우편 발송 시 접수증을 봉투 앞면에 부착하여 발송바람**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신청 장소 안내

**\* 주차 공간 협소로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무교동 7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 ○ 교통정보

##### ① 지하철

- 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시청 삼거리에서 좌회전(무교로 방면)→서울파이낸스빌딩 옆
-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시청 삼거리에서 우회전(무교로 방면)→코코부르니(커피숍) 건너편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동아일보사 건너편

##### ② 버스

- 101번, 150번, 402번, 405번, 501번, 506번, 1711번, 7016번 버스 탑승 후 '서울신문사' 하차 후 광화문방면으로 50m 직진 후 우회전 후 130m 직진
- 종로09번, 종로11번 버스 탑승 후 '프레스센터' 하차 후 광화문방면으로 150m 직진 후 우회전 후 130m 직진

#### ○ 약도



□ 시·도교육청 방문신청 장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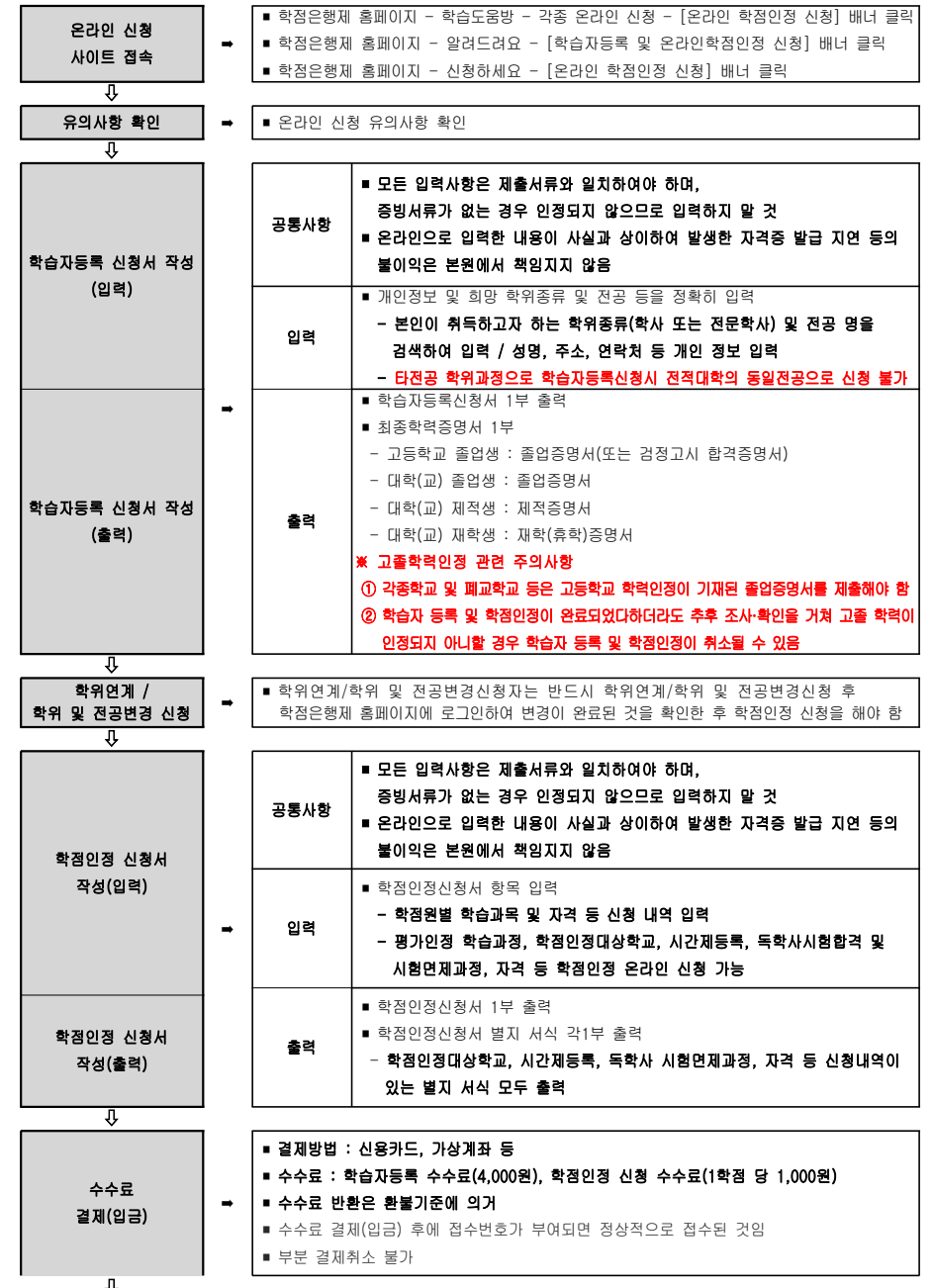
기관	부서	전화번호	주소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02)1396	서울특별시 중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2-77)
부산시교육청	건강생활과	051)8600-4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양정1동 455-1)
대구시교육청	총무과 민원실	053)231-057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수성2가 119-2)
인천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32)420-82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1137)
광주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062)380-42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별관 1층 (화정동 657-37)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	042)616-823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둔산2동 1294)
울산시교육청	총무과 고객지원팀	052)210-540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1층 고객지원팀(유곡동 250)
세종시교육청	행정과	044)320-3254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보람동 664-15)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031)820-0538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 의정부시 통일로 700 (금오동 431-1)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	031)259-1052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 (권선동 1234)
강원도교육청	지식정보과	033)259-0894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사농동 84)
충청북도교육청	과학국제문화과	043)290-223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산남동 4-1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	041)640-821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신경리 8-1)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	063)239-340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효자동2가 1325)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	061)260-0878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남약리 1457)
경상북도교육청	과학교직업과	054)805-3425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갈전리 4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055)210-519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경남교육청 제 2청사 교육복지과
제주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064)710-03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연동 31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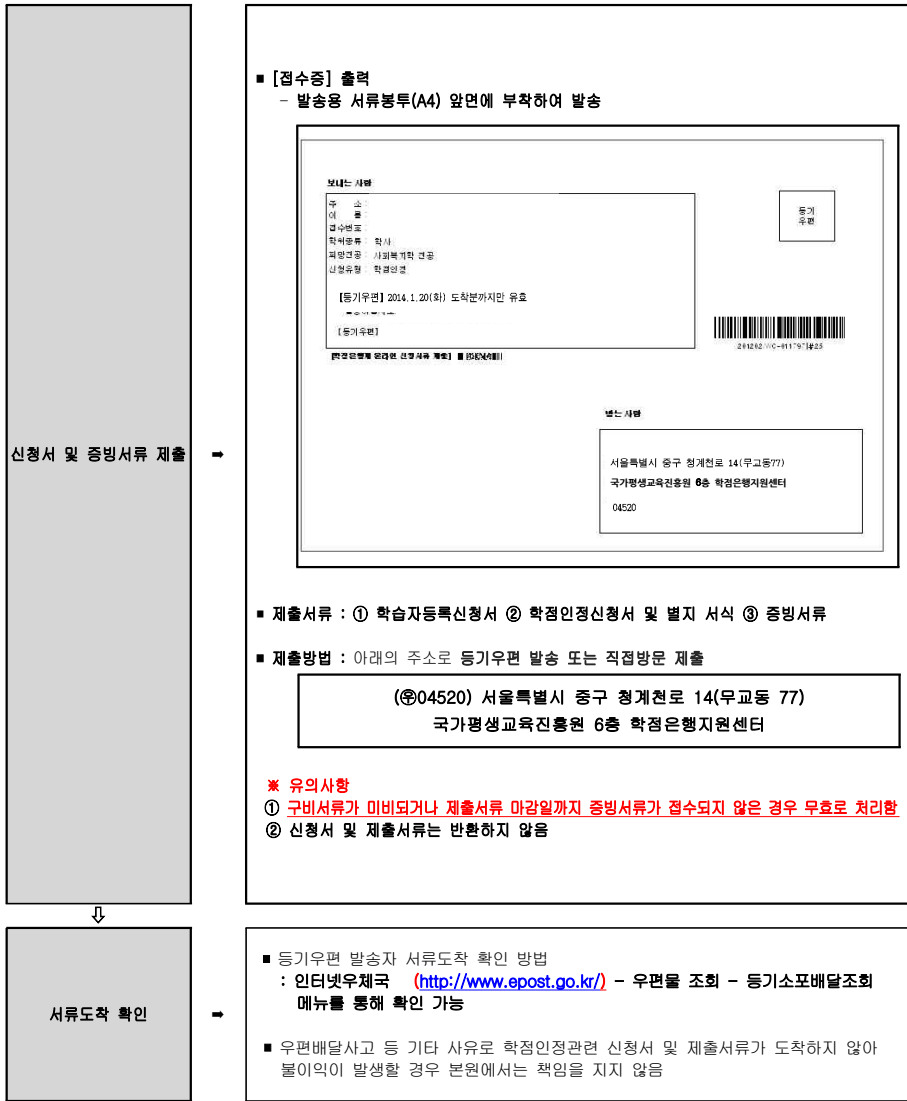
※ 교육청 방문접수 시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기관이수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불가하므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바람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본원으로 서류가 발송되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접수 불가

[붙임 1]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각종 접수현황]→[현재 신청현황]을 통해 서류도착 및 검토 중, 서류미비, 환불발생, 처리완료(혹은 처리예정일) 등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붙임 2] 학습자등록신청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첨부서비스 안내**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에서는 2011. 12. 1부터 학습자등록에 필요한 최종학력증명서의 온라인 첨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첨부서비스란, 기존에 온라인으로 학습자등록 신청 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최종학력증명서(졸업·재적·제적)를 온라인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말합니다.

온라인 첨부서비스는 각 대학의 인터넷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아이애크, (주)디지털존의 증명서 첨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협약이 체결된 대학 졸업(재학·제적)자 중 희망자(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첨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학습자등록 수수료 외에 각각의 증명서 발급업체에서 책정된 소정의 인터넷 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 증명서 첨부를 위해 결제한 이후에는 발급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해당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첨부서비스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학습자등록 신청하신 후, 신청서와 최종학력증명서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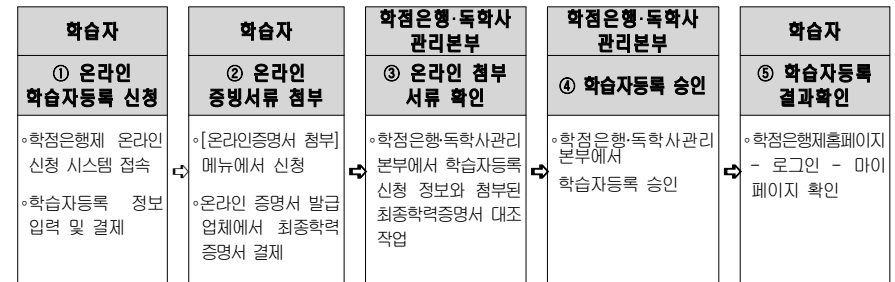
○ 온라인 첨부 서비스 제공 업체 및 대학

- (주)아이애크 : 1544 - 4536([www.certpia.com](http://www.certpia.com))

- (주)디지털존 : 1644 - 2378([www.webminwon.com](http://www.webminwon.com))

※ 온라인 첨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업체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업체별 서비스 제공 대항현황은 온라인학습자등록신청시스템 - 온라인증명서첨부 메뉴에서 확인가능

□ 온라인 첨부서비스 흐름도





**[붙임 3]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 제출 서류**

□ 북한이탈주민 학습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 :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학력인정증명서] 및 [학력확인서] 제출
-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 : 통일부장관이 학력인정 사항을 증명하는 [공문] 제출(공문 제출 시 학교명 및 졸업일 등이 기재된 공문의 붙임자료 포함)

□ 북한이탈주민의 대학 등 학습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안내

- [학점은행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전체-10488번]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고시’ 참조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 대한민국 고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 등록 번호를 가진 자 또는 외국 국적자 중 신고를 통해 외국인 등록번호 및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학습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구분		고졸	대졸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내국인)	○	○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내국인 외)		
	▪ 귀화한 내국인 : 귀화 및 개명사실 확인을 위해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제출		
학력 확인 서류	▪ 대한민국 국적 → 외국 국적 : 말소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일부터 조회하여 발급)	○	○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졸업장(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 대학 졸업장(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
	▪ 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
	▪ 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 공증 각 1부	○	○
▪ 학습자 등록자격 심사신청서 1부	○	-	

- ※ 학력인정확인서 해당 국가기관을 통해 정규학교 여부에 대한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
- 등록자의 국가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 및 안내 : [www.0404.go.kr](http://www.0404.go.kr) → 영사서비스/비자 → 영사서비스 →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 등은 해당국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해당국 교육 법령에 의거한 정규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학력인정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및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이 안 될 경우,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단,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 학습자 등록자격 심사신청서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시 초·중·고 재학기간 및 재학년 수를 요약 기재할 수 있는 「학습자 등록자격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학습자 등록자격 심사신청서 양식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학습자신청양식 581번] 탑재

□ 주요 국가의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2018년 4월 현재기준

국가	발급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	비고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내: 서울공자아카데미 ‘학위인증보고’ 제출 필수</li> <li>• 중국내: 중국 교육부 학력인증센터(86-10-8233-8424)</li> </ul>	- 중국학력학위 인증센터 : <a href="http://www.cis.or.kr">http://www.cis.or.kr</a> - 전화: 02-554-2688	2004년 이후 고졸자로서 대입시험 참가 경력자 혹은 1993년 이후 2년제 전문대 이상 졸업자만 발급가능
미국	고등학교	주미 해당지역 한국 영사관	-
	대학교	한미교육위원단 유학상담센터	02-3275-4011 02-3275-4018
캐나다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a href="http://overseas.mofa.go.kr/ca-ko/index.do">http://overseas.mofa.go.kr/ca-ko/index.do</a>	최종학력 증명서에 “영사확인” 필요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고등학교, 대학교)	02-739-7400	고등학교 및 2년제 단기대학, 4년제 대학에 대하여 “학교장 직인 확인서(=인증증명서)” 발급
호주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우편으로만 신청가능	02-2003-0102	고등학교, 대학교에 “학교확인서” 발급
뉴질랜드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02-3701-7700	고등학교, 대학교에 “학교확인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 및 중·고등학교 교육기관 : <a href="http://www.minedu.govt.nz/Parents/AllAges/SchoolSerach.aspx">http://www.minedu.govt.nz/Parents/AllAges/SchoolSerach.aspx</a></li> <li>• 고등교육기관(대학교) : <a href="http://www.nzqa.govt.nz/providers/index.do">http://www.nzqa.govt.nz/providers/index.do</a></li> </ul> ※홈페이지에서 학력인정이 확인 가능함. ※지원자는 학력 인정되는 학교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캡처 및 출력하여 제출 ※아포스티유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해당국가 대(영)사관 공증서 제출 제외	
남아프리카 공화국	MIE	<a href="http://www.mie.co.za">www.mie.co.za</a>	

베트남	주한 베트남 대사관	02-739-2065, 02-734-7948	
스페인	주한 스페인 대사관	02-794-3581~2	
	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교육부	34-91-353-2000	
영국	주한 영국문화원 *이메일 신청	02-3702-0600	“정규학교 확인서” 발급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과	02-794-1350	“학력인정 확인서” 발급
필리핀	고등학교 : 주한 필리핀 대사관 대학교 : 필리핀 외무성	주한 필리핀 대사관 : <a href="http://www.philembassy-seoul.com/">http://www.philembassy-seoul.com/</a>	“학력(교육과정)인정 확인서” 발급

□ 유의사항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하며, 외국교육기관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가능(점심시간 12:00~13:00 및 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 반드시 사본과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처에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원본은 반환함(출력본은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습자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문서보존규정에 의거 1년까지 보존함
- 제출서류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외국학력자의 경우에는 학습자등록신청서, 학습자 등록자격 심사신청서, 외국학력 신청 구비서류 제출 후 심의를 거쳐 학습자등록여부가 결정됨. 따라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학습자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 될 수 있음
- 등록가능한 최종학력은 학사까지이며 석·박사 학위로는 학습자등록 불가함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학위수여가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학위수여는 취소됨
- 외국교육기관이수자의 경우 방문접수기간 외에는 외국서류 검토 및 방문상담 불가함